



행정기관명

수신자
(경유)

제 목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사전통지

① 통 지 번 호		② 통 지 일 자	
인적 사항	③ 법 인 명	④ 사업자등록번호	
	⑤ 대 표 자 명		
	⑥ 사업장소재지 (전화 :)		
요건(1) : ' .12.31. 기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에 따른 최근 2년간 의무불이행 추정세액 (총추징세액 : 원)			
⑦ 세 목 명	⑧ 고지일자	⑨ 추정세액	⑩ 의무위반유형
		원	
요건(2) : ' .12.31. 기준 최근 3년간 기부자별 발급명세 미작성·미보관한 내역			
⑪ 귀속연도	년	⑫ 미작성·미보관 금액	원
요건(3) : ' .12.31. 기준 최근 3년 이내 거짓영수증 발급내역			
⑬ 발 급 건 수	건	⑭ 발 급 금 액	원
요건(4) : ' .12.31. 기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법인 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내역			
⑮ 가.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5항 각 호(같은 항 제1호는 제외)의 의무 위반			회
⑯ 나. 주무관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 여부를 미보고			회
명단공개내역 및 소명기한			
⑰ 명단공개 예정일	년 12월		
⑱ 명 단 공 개 방 법	관보,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, 세무서 게시판		
⑲ 소 명 기 한	. . . ()		

「국세기본법」 제8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귀 단체의 명칭, 대표자 성명, 추정내역, 거짓영수증 발급내역, 의무불이행 내역 등이 공개될 수 있으니, 명단공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 안내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발 신 명 의

직인

1. 소명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명단 공개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2. 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
◆ 담당자 : ○○세무서(지방국세청) ○○○과 ○○○ 조사관(전화 : , 전송 :)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 검토자 직위(직급)서명 결재권자 직위 (직급)서명
협조자
시행 처리과-일련번호(시행일자) 접수 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일자)
우 주소 / 홈페이지 주소
전화() 전송() /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/ 공개구분